

<p>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</p> <p>○ 개정안 제7조의 개정은 공동주택건설을 지구내 기존 건축물이 완전 철거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국·공유지인 경우는 소유주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지구지정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며,</p> <p>제8조 제3항 중 “참작하여” 다음에 “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건축물의” 추가는 개선계획에서 개량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며,</p> <p>제12조(변소)의 개정은 신축건축물에 대한 용어정의가 제2조의 제5호로 신설이항됨에 따라 이를 삭제코자 한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</p> <p>○ 개정안 제18조(건폐율) 및 제19조의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, 제20조(용적율) 그리고 제21조의(건축물의 높이제한) 등에 대한 개정은 모법 제9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적용의 특례가 현행조례 규정의 해석상 혼동을 배제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적법한 개정안으로 인정됨.</p> <p>○ 개정안 제25조(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은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규모를 주택 형태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통일하도록 하였으며,</p> <p>○ 제32조(토지의 매각규모등) 제2호의 개정은 비주거용건물의 신축시는 주거용건물의 토지 매각규모와 형평을 유지되도록 규모를 조정한 것이며, 같은 조문 제2항 제3호 중 “건축법 제39조의2 제1항”을 “제49조 제1항”으로 개정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표기 정정으로 개정안이 관련법 내용과 일치한다고 사료됨.</p> <p>○ 제33조(토지의 가격산정및 매각시기)의</p>	<p>개정은 지방재정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토지의 매각시기 및 매각가격 결정 방법등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상 혼선이 없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</p> <p>이상 개정조례안을 조항별로 검토한 바,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임시조치법으로서 이법에서 타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부분적으로 타법의 적용범위를 배제하고 건축법 준용에 있어서는 이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또, 현행조례중 주차장 설치규정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대체하면서 한편,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기간이 짧아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대체로 현황에 맞게 개정코자 한 것으로 개정안 전체가 관련 법령에 맞고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.....</p> <p>○委員長 朴泰源 지금까지 執行部の 意見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油印物을 보셨습니다. 이에 대해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發言하실 委員 있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더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므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</p> <p>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을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5. “신축건축물”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</p>
--	---

<p>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후 제4호의 특례제한건축물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제4조중 “법 제7조제2항”을 “제7조제3항”으로, “시장”을 “시행자”로 한다.</p> <p>제5조제1항중 “일반주거지역의 기능”을 “주거기능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제1항중 “법 제6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제6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</p> <p>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7조(공동주택 건설계획)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당해 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국·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제8조제3항중 “참작하여” 다음에 “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건축물의”를 추가한다.</p> <p>제12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특례제한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8조중 “건축법 제47조”를 “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”로 한다.</p> <p>제19조중 “건축법 제49조제1항”을 “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”로 하고 “동조 제2항”을 “건축법 제49조제2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20조중 “건축법 제48조제1항”을 “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”로 한다.</p> <p>제21조중 “규정은”을 “규정에 불구하고”로 한다.</p> <p>제25조 본문단서중 “다음 각호의 주차대수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”를 “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하고,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.</p> <p>제32조제1항제2호중 “그 건축면적이하”를 “그</p>	<p>건축면적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제3호중 “건축물의 제39조의2제1항”을 “건축법 제49조제1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3조(토지의 가격산정 및 매각시기) ①제31조에 의한 연고권자는 개선계획수립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32조에 의한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토지매각 대금의 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[별표] 중 “신축(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)”을 “신축건축물”로 한다.</p> <p>[별지서식]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삭제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</p> <hr/> <p>7.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(17時 30分)</p> <p>○委員長 朴泰源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서울市長을 代理하여 住宅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住宅局長 梁 甲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저희가 이번에 改正하고자 하는 事由는 建築法施行令이 93年 8月 9日字로 改正됨에 따라서 條例改正이 必要한 그러한 事項과, 그간 條例 運營上 調整이 必要한 部分을 實情에 맞도록 改正해서 市民便宜 및 建築發展을 도모하고자 하는 事項들입니다.</p> <p>主要 改正內容은 첫번째로 11層 未滿이라</p>
--	--